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 5.



행 정 안 전 부
회 계 계 약 제 도 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 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기준과 다른 규정을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상태표 분류체계 개정(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1)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 중 유동성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계정의 성격별 분류체제로 개편
- 2) 자산은 금융, 유·무형, 기타자산로 분류/부채는 차입, 충당, 기타 부채로 분류 간소화

나.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범위 및 표시방식 개정

(안 제59조)

- 1) 충당부채 기준을 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발생이 불확실하더라도 재무제표에 인식
- 2) 우발부채·자산 기준을 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잠재적 손실·이익도 주석에 인식

다. 부채인식 기준 정비(안 제12조)

부채 기준을 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인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를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산은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금융자산)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을 말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일반유형자산)”을 “(유·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유·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3항, 제4항에 따른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③ 주민편의시설이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 ④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 ⑤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을 말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기타자산) 기타자산은 금융자산, 유·무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21조 중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를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부채”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차입부채) 차입부채는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부채로서 지방채, 차입금, 지방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 차입부채를 말한다.

제23조(장기차입부채)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제24조(기타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제59조의 제목 “(우발상황)”을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발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공시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지방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해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의무

③ 우발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지방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석에 공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상태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재 정 상 태 표

해당연도 20××년×월×일 현재
직전연도 20××년×월×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원)

과 목	해당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 회계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내부 거래	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 회계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내부 거래	계
자산												
Ⅰ.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금융자산												
Ⅱ. 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Ⅲ. 기타자산												
기타자산												
자산 총계												
부채												
Ⅰ. 차입부채												
지방채												
차입금												
지방채 무부담행위액												
기타차입부채												
Ⅱ. 총당부채												
퇴직수당총당부채												
보증총당부채												
기타총당부채												
Ⅲ. 기타부채												
기타부채												
부채 총계												
순자산												
Ⅰ. 고정순자산												
Ⅱ. 특정순자산												
Ⅲ. 일반순자산												
순자산 총계												
부채와 순자산 총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①·② (생략) ③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12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 ----- ----.
제13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①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13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삭 제> ①·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4조(자산의 분류) ①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4조(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5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	제15조(금융자산)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

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을 말한다.

제16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제17조(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입목 등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용상품, 투자증권, 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을 말한다.

제16조(투자자산) <삭 제>

제17조(유·무형자산) ① 유·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3항, 제4항에 따른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주민편의시설이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18조(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④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⑤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을 말한다.

제18조(주민편의시설) <삭 제>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삭 제>

제20조(기타자산) 기타자산은 금융자산, 유·무형자산에 속하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제21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제22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제23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에수보증금, 장기 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21조(부채의 분류) ----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부채-----.

제22조(차입부채) 차입부채는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부채로서 지방채, 차입금, 지방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 차입부채를 말한다.

제23조(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제24조(기타부채) 기타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제59조(우발상황) ①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 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2.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제59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①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우발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공시한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지방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3.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신 설>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의무

<삭 제>

③ 우발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지방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석에 공시한다.